

	대학구조조정에 관한 규정	문서번호	MSU-
		제정일자	2007. 2. 2.
		최종개정일자	2021. 10. 18.
		담당부서	기획산학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 교육환경의 급속한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목표과 학대학교의 구조조정(이하 "구조조정"이라 한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6〉〈개정 2019.8.9〉

제2조(적용범위)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9.8.9〉

제3조(적용대상) 구조조정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6〉

1.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학사에 관한 자체 조정사항〈개정 2019.8.9〉
2. 학과 신설·예비폐과(폐과)·학생정원 조정에 관한사항〈개정 2019.8.9〉
3. 모집단위 명칭 변경 및 통폐합에 관한 사항〈개정 2019.8.9〉
4. 폐과로 인한 교원의 전공전환 및 소속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19.8.9〉
5.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개정 2019.8.9〉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조 신설 2017.1.6〉

1. "통폐합"이라 함은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개 이상의 학과를 하나의 학과로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8.9〉
2. "구조조정"이라 함은 학과의 신설·통폐합·폐지·폐과·명칭변경·학생정원 조정·전공 전환 등을 말한다.〈개정 2019.8.9〉
3. "예비폐과"라 함은 모집단위의 익년도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8.9〉
4. "폐과"라 함은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어 모집단위 편제정원 0명이 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8.9〉
5. "전공전환"이라 함은 학과 신설 및 학과 폐지(폐과) 통폐합에 따라 교수의 전공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8.9〉

제5조(구조조정 기본방향) 구조조정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조 신설 2017.1.6〉〈개정 2019.8.9〉

1. 대·내외 환경과 산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개정 2019.8.9〉
2.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성화 학과를 육성한다.〈개정 2019.8.9〉
3. 대학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한다.〈개정 2019.8.9〉

제6조(구조조정 방안 수립) ① 구조조정은 기획산학처장이 관장한다.〈개정 2019.8.9〉

② 기획산학처장은 매년 4월1일을 기준으로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9.8.9〉

③ 기획산학처장은 관련 학과 및 부서의 의견수렴과 제출받은 서류를 근거로 구조

조정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9.8.9>

④구조조정 방안은 대학구조조정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로 확정·시행한다.<개정 2019.8.9>

⑤제4항의 구조조정 방안은 매년 4월 말 까지 확정한다.<개정 2019.8.9>

제6조의2(대학구조조정위원회)<조 신설 2019.8.9>①구조조정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구조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구조조정 대상)①구조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과성과평가를 따르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9.8.9>

1.대학중장기발전계획 및 특성화, 유사 학과 등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대학의 교육경쟁력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학과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9.8.9>

2.학과 상호간 협의에 의해 학과 통폐합 등 학과구조조정 방안을 요청하는 경우
<개정 2019.8.9>

3.학과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희망하여 요청하는 경우<조 신설 2017.1.6><개정 2019.8.9>

①학과신설은 학생모집과 취업경쟁력이 있는 전략육성분야에 한하며 입학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범위 내에서 자체 조정하여 신설한다.<개정 2019.8.9>

②모집단위 정원조정은 신입생 모집 경쟁력을 감안하여 필요시 할 수 있다.<개정 2019.8.9>

③학과 성과평가 결과 구조조정 대상학과에 대하여는 정원 조정·통합·폐지를 할 수 있다.<개정 2019.8.9>

제8조(구조조정 평가·선정) ①구조조정 평가·선정은 최근 3년간 학과 성과 평가 결과를 활용하고, 하위그룹에 해당하는 학과 또는 평가지표별 여건이 열악한 학과를 대상학과로 선정한다.<개정 2019.8.9>

②위원회에서는 제1항에 의거 선정된 학과에 대하여 대내외 환경변화 분석내용을 포함한 자구노력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와 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개정 2019.8.9>

③위원회에서는 대상학과 선정 등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최종 심의 결과에 대하여 교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8.9>

④제1항에 의거 대상학과로 선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익년도에 지표향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학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9.8.9>

제9조(학과명칭 변경 및 통폐합) ①학과 또는 계열(이하 "학과"라 한다)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과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교무입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8.9>

1.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개정 2019.8.9>

2.학과 운영계획서<개정 2019.8.9>

3.교수별 담당 시수표<개정 2019.8.9>

4.신규 교과과정<개정 2019.8.9>

5.소속 교수의 전공 타당성 등<개정 2019.8.9>

②학과와 통폐합은 과년도 입학충원 결과와 제8조를 따른다<개정 2019.8.9>.

③통폐합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교원평가의 일부를 보류할 수 있다.<개정 2019.8.9>

있다.<개정 2009.9.28>

제10조(학과 개설) 학과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개정 2019.8.9>

1.교육 및 산업 환경 분석, 대학의 정책, 특성화 방향 등을 검토하여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를 신설할 수 있다.<개정 2019.8.9>

2.학과에 요청에 따라 전공 세분화, 학과 규모 등을 검토하여 학과를 분리할 수도 있다.<조 신설 2017.1.6>

제11조(예비폐과(폐과))<개정 2019.8.9><개정 2021.10.18>①예비폐과(폐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모집단위별 총원율이 대학 전체 재학생 총원율에 미달하는 경우<개정 2019.8.9>

2.매학년도 10월 31일 기준 1학년 등록학생 수가 25명 미만일 경우<개정 2021.10.18>

3.학과평가 결과 하위 20%이내에 속할 경우 또는 학과평가 지표 중 재정운영 손익이 적자인 경우<개정 2019.8.9>

4.기타 학과 경쟁력 감소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9.8.9>

제12조(전공전환 및 소속 변경)①전공전환 및 소속 변경은 학과 신설 및 예비폐과(폐과), 통폐합에 따른 전공전환을 의미하며 이를 희망하는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9.8.9>

②전공전환 및 소속 변경은 이 규정에 의거 폐과 및 통합 대상학과소속 전임교원의 석박사 학위취득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신청마감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공전환을 제한한다.<개정 2019.8.9>

1. 퇴직 잔여기간이 5년 미만인 자

2. 1회 이상 전공전환 교육을 받은 자

3. 그 밖에 전공전환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개정 2009.9.28>

③전공전환 및 소속 변경은 폐과 교원이 학문분야의 유사성이 높은 학과의 전공분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개정 2019.8.9>

제13조(전공전환 및 소속 변경 신청) ①전공전환 및 소속변경 희망교원은 신청기한 내에 전공전환 신청서<별지서식 1호>, 학부,학과 소속변경 신청서<별지서식 4호>를 학사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8.9>

②교무입학처장은 제1항에 의거 제출받은 서류를 7일 이내에 전공전환 및 소속 변경 대상학과로 이송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 학과로의 전공전환 및 소속 변경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별지서식 3호, 별지서식 6호><개정 2019.8.9>

③전공전환 및 학부, 소속 변경 신청 마감일은 매학기말로 한다.<개정 2009.9.28>

제14조(전공전환 및 소속 변경 심의)<개정 2019.8.9> ①전공전환 및 소속변경을 신청한 전임교원에 관한 1차 심의는 전임대상 학과장 주관 하에 진행한다.<개정 2019.8.9>

②전공전환 및 소속 변경 시 전입 대상학과에서는 소속 교수 전원의 심사평가서 <별지서식 2호, 별지서식 5호>를 7일 이내에 교무입학처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8.9>

③교무입학처장은 제2항에 의거 제출받은 심사결과를 즉시 위원회에 심의요청 하여야 한다.<신설 2009.9.28><개정 2019.8.9>

④전공전환 및 소속 변경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총장의 결정에 따라 업적평가의 일부를 유보할 수 있다.<신설 2019.7.26><개정 2019.8.9>

제15조(전공전환 준비 기간) 전공전환을 위한 학위과정 및 산업체 연수기간 등은 총장이 이를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9.9.28>

제16조(전공전환 신청자 의무) ①전공전환신청자는 전공전환계획내용을 충실히 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전공전환신청자는 전공전환 기간 중 매학기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학사지원처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③전공전환신청자는 전공전환 신청기간 종료일까지 최종결과보고서를 교무입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공전환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지체 없이 학사지원처에 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9.28>

제17조(과원에 대한 감원) ①과원은 재학생수가 산출을 기준으로 교수대비 확보율에 미달했을 경우를 의미한다.<개정 2019.8.9>

계열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 · 체능
교원 1인당 학생 수	20	20	20	20

②입학정원 감축이나 재학율 산출 등에 의해 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학과소속 변경으로 전입한 자를 우선으로 감원하고, 교원평가 취득점수가 가장 낮은 순으로 감원한다.<개정 2014.2.14>

③폐과절차가 진행 중인 학과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19.8.9>

1. 1차년도는 수업시수가 적은 순으로 감원한다.
2. 2차년도 업무 종결 시 폐과된다.<신설 2009.9.28>

제18조(폐과 절차) 폐과 절차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개정 2019.8.9>

①구조조정 사안 발생 1차 연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8.9>

1. 자구계획서(발전계획, 신학과 설치계획 등) 제출
2. 전공전환 신청
3. 희망퇴직 신청
4. 과원발생에 대한 감원

②구조조정 사안 발생 2차 연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8.9>

1. 희망퇴직 신청
2. 과원발생에 대한 감원
3. 폐과(단, 구조조정의 사유가 소멸되면 폐과 절차를 유보할 수 있다.)

제18조의2(학생보호)<조 신설 2017.8.9>①구조조정 과정에서 폐과되었다 하더라도 재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학과를 존속시키고 지도교수를

두어 학생이 학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폐과된 학과의 학생들이 전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학칙 등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학과로의 전과를 우선적으로 허용하여야 한다.

제19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9.28.><개정 2019.8.9>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전공전환 신청서

	접수	담 당	과 장	교무입학처장	총장
일자					
번호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소속		직급	
주소			
임용년월일		근속년수	년 개월
전공전환기간		전공전환형태	대학원, 산업체연수, 기타
교육(소속)기간		소요경비(예상)	
전공전환 계획서	* 별지에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타과로의 전공전환) 1. 전공전환 목적 2. 학기별 담당희망과목 및 시수표 3. 전공전환 방법 4. 기타		
	* 별지에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신설과로의 전공전환) 1. 신설학과의 비전 2. 교육과정 3. 전공전환 방법 4. 학기별 담당희망과목 및 시수표 5. 학과운영방안 및 강의계획서 6. 현 시설처리 방법 및 신규준비 시설 7. 타 대학 성공사례 조사 8. 기타		

본 대학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전공전환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소속부서장 : (인)

목포과학대학교총장귀 하

〈서식 제2호〉

전공전환 심사 평가서

전공전환 대상자 :

심사 평가 내용			
심사항목	평가내용 요약	적합성판정 (가, 부)	권고 내용
전공전환 목적			
학기별 담당 희망과목			
학기별 시수표			
전공전환 방법			

종합평가 :

종합판정 : (가, 조정 후 가, 불가)

전공전환 심사결과를 상기 내용과 같이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자 : (과) (인)

목포과학대학교총장 귀하

〈서식 제3호〉

전공전환 심사 평가서(신설학과)

전공전환 대상자 :

심사 평가 내용			
심사항목	평가내용 요약	적합성 판정 (가, 부)	권고 내용
신설학과의 비전			
교육과정			
전공전환 방법			
학기별 담당과목			
학기별 시수표			
학과 운영계획 등			
현 시설처리방법			
신규 시설			
타 대학성공사례			

종합평가 :

종합판정 : (가, 조정 후 가, 불가)

전공전환 심사결과를 상기 내용과 같이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자 : 구조조정위원

(인)

목포과학대학교총장 귀하

학부, 학과 소속변경 신청서

접수		담 당	과 장	교무입학처장	총장
일자					
번호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소속		직급	
주소			
임용년월일		근속년수	년 개월
전공과목		유사과목 강의경력	
학과전과 계획서	* 별지에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타과로의 학과전환) 1. 학과전환 목적 2. 학기별 담당희망과목 및 시수표 3. 기타		
	* 별지에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신설과로의 학과전환) 1. 신설학과의 비전 2. 교육과정 3. 학기별 담당희망과목 및 시수표 4. 학과운영방안 및 강의계획서 5. 현 시설처리 방법 및 신규준비 시설 6. 타 대학 성공사례 조사 7. 기타		

본 대학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학부, 학과소속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신청인 : (인)
소속부서장 : (인)

목포과학대학교총장 귀하

〈서식 제5호〉

학부, 학과 소속변경 심사평가서

대상자 :

심사 평가 내용			
심사항목	평가내용 요약	적합성 판정 (가, 부)	권고 내용
학과전과 목적			
학기별 담당 희망과목			
학기별 시수표			

종합평가 :

종합판정 : (가, 조정 후 가, 불가)

심사결과를 상기 내용과 같이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자 : (과) (인)

목포과학대학교총장 귀하

〈서식 제6호〉

학부, 학과 소속변경 심사평가서(신설학과)

대상자 :

심사 평가 내용			
심사항목	평가내용 요약	적합성 판정 (가, 부)	권고 내용
신설학과의 비전			
교육과정			
학기별 담당과목			
학기별 시수표			
학과 운영계획 등			
현 시설처리 방법			
신규 시설			
타 대학 성공 사례			

종합평가 :

종합판정 : (가, 조정 후 가, 불가)

심사결과를 상기 내용과 같이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자 : 구조조정위원

(인)

목포과학대학교총장 귀하